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22.

제출자 :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시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동절기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를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(안 제13조제1항).

※ 동절기 :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5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